

여러분의 권리를 알아두십시오!



채권 추심자가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?

우리는 모두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채권 추심과 관련한 권리가 있습니다.

채권 추심자는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사람의 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연방법에 따라 혜택 대부분이 법률상 채권 추심에서 '면제'되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뉴욕주 주민은 *뉴욕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권리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은행 계좌에 정부 보조금만 포함된 경우 채권 추심자는 해당 계좌에서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
- 또한 채권 추심자는 다음의 경우에도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가거나 계좌를 동결할 수 없습니다.
 - 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총 4,080 달러 이하이고 정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음
 - 또는 —
 - 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총 3,425 달러 이하이고 정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(단, 계좌에 월급 등 다른 소득원이 포함된 경우도 포함).

*뉴욕에서는 2008년 면세 소득 보호법(EIPA)이 통과됨에 따라 채권 추심자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가 없는 뉴욕 주민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한 정보는 뉴욕 금융정의 핫라인(212-925-4929)으로 문의하십시오

핫라인 센터는 뉴욕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.

핫라인 운영 시간: 월 오후 4~6시 | 화, 수, 목 오후 12~2시



뉴욕시 주민 권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fjhotline.nyc에서 확인하십시오

이 전단지는 뉴욕 주민에게 법률 상담이 아닌, 일반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.

뉴욕 뉴 에코노미 프로젝트(New Economy Project) 단체는 뉴욕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'뉴욕 금융정의 핫라인(NYC Financial Justice Hotline)'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 뉴 에코노미 프로젝트의 사명은 인종·성별 정의실현, 협업, 이웃 형평성, 생태적 지속 가능성 추구를 근간으로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.

